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0
----------	------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 정 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의결(완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 필요성

-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개관일자 : 1970.11.11.)
- 시설규모 : 부지 985㎡ / 건물 6,911㎡
- 주요시설 : 청소년아지트, 특성화공간 '움', 동아리실, 예·체능실, 위탁형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40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06백만원, 운영비 513백만원, 사업비 1,123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19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이하 ‘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본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70. 11. 11.
- **시설규모** : 부지 985㎡ / 건물 6,911㎡
- **주요시설** : 청소년아지트, 특성화공간 ‘움’, 동아리실, 예·체능실, 위탁형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940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06백만원, 운영비 513백만원, 사업비 1,123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19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의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지식·정보화 등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 교류,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 시설의 관리·운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중구 소재 서울청소년센터는 도심부 위치, 교통 편리 등 접근성에 이점이 있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하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청소년센터는 1970년 개관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이하 '한국청소년육성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8층의 시설로, 32명(정규직 11명, 계약직 21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7개 분야, 25개 사업, 1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1992.07.01.~1995.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1995.07.01.~1998.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3차 위탁	3년(1998.07.01.~2001.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2001.07.01.~2004.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5차 위탁	3년(2004.07.01.~2007.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2007.07.01.~2010.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7차 위탁	3년(2010.07.01.~2013.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9차 위탁	3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10차 위탁	2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11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공개모집
12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재계약

- 2024년 서울시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에서는 부서별 인력편차, 인력 규모의 적정성, 높은 이직률, 하반기에 집중된 예산집행, 성과의 일관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서울청소년센터의 활성화 정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짐.
- 이에 서울청소년센터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중구 내 청소년보다는 서울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이라는 기능은 매우 미흡하고,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청소년복지시설의 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있어, 서울청소년센터를 청소년활동시설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 내 청소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에 집중할 예정(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으로 밝히고 있으나, 기능전환(청소년센터→평생교육시설) 없이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활동보다 우선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며,
 -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관이 지역 내 청소년이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시설에서 성인 위주의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평생교육국이 아닌 위탁기관에서 내리는 상황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평생교육국의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청소년센터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중 운영계획 일부 발췌 〉

② 문제점

구분	내용
지역 여건	본 센터의 위치는 대한민국 주요 업무지구로, 주거지보다 기업, 상가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 재개발로 인해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참가 가능한 청소년 및 성인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③ 개선계획 (문제점과 1:1 대응되도록 기재)

구분	내용
지역 여건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있으며, 본 센터의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여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통해 <u>서울시 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u> 하고, 특히 청소년 <u>약자동행(장애, 위기 청소년) 정책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운영</u> 하고자 한다. 재개발 후 새롭게 유입되는 <u>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요 업무지구라는 지역여건을 타파</u> 하고자 한다.

출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_서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 자료)

- ‘2025년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사업추진계획’에는 서울시 위탁사무 외 타 기관에서 수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7개 사업, 51개 프로그램에 달하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에는 서울시 민간위탁금만이 표기되고 있어, 정확한 수입·지출을 기재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025년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사업추진계획 중 발췌 〉

(단위 : 명, 천원)

구분		내 용	계획인원 (명)	소요예산	
				수입	지출
합 계 : 7개 분야, 25개 사업, 160개 프로그램			305,085	1,092,065	1,122,790
	교육문화	1개 사업, 8개 그로그램	766	35,490	18,115
	생활체육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1,824	153,300	74,994
	목적사업	11개 사업, 67개 프로그램	84,546	339,305	344,205
	자본형성(기능보강 등)	1개 사업, 1개 프로그램	-	-	23,595
	보조금	2개 사업, 18개 프로그램	8,507	-	128,000
	민간위탁	7개 사업, 51개 프로그램	169,102	-	395,839
	기타	1개 사업, 10개 프로그램	40,340	563,970	138,042

〈 서울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2,939,792	100.0%	3,058,481	10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446,583	49.2%	1,503,717	49.2%
		민간위탁사업비	23,595	0.8%	50,000	1.6%
	보조금	국비보조금	128,000	4.4%	131,840	4.3%
	사업수입	시설사용료수입	375,000	12.8%	386,250	12.6%
		시설이용료수입	188,970	6.4%	194,639	6.4%
		사업별수입	528,095	18.0%	543,938	17.8%
	사업외수입	이월금	0	0.0%	0	0.0%
		예수금 및차입금	165,000	5.6%	165,000	5.4%
		이자수입	549	0.0%	800	0.0%
		기타수입	84,000	2.9%	84,000	2.7%
세출예산	계		2,939,792	100.0%	3,058,481	100.0%
	인건비		1,105,576	37.6%	1,138,743	37.2%
	운영비		513,366	17.5%	570,742	18.7%
	사업비		1,122,790	38.2%	1,150,346	37.6%
	사업외지출		165,000	5.6%	165,000	5.4%
	예비비		30,000	1.0%	30,590	1.0%
	지난년도지출		-	-	-	-
	반환금		-	-	-	-
	일반관리비		60	-	60	-
	이윤		-	-	-	-
	부가가치세		3,000	0.1%	3,000	0.1%

- 서울청소년센터는 정원이 27명임에도 불구하고, 11명만을 일반직으로 운영하고, 21명은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등 기형적인 인력운용이 지속하고 있으며, 센터의 조직구성도 「청소년시설 시행규칙」의 규정한 바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서울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명)

	총계	일반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7	22	1	1	0	3	4	7	6	3	2	-	-	-
현원	32	11	0	1	1	2	2	2	1	2	0	21	19	2

- 이러한 규정에 맞지 않는 조직구성과 인력 운용의 이유가 주변 인구 감소 및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지출 대비 적은 수입’에 기인하여 수익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서울청소년센터가 중구 내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집중하지 않고, 광역 단위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적·환경적 여건이 원인인지, 자원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청소년 사업에 집중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평가와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국청소년육성회는 서울청소년센터를 33년간 운영하고 있고, 한국청소년육성회의 본부는 서울청소년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 서울청소년센터 건물 6층과 7층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서울청소년센터는 서울시의 시설이 아닌 한국청소년육성회의 종속화 및 부속화된 시설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청소년센터와 한국청소년육성회의 관계

- 서울청소년센터는 대한민국 1호 청소년시설로,
- 1964년 설치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에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발의(1965년)하여,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해 서울청소년수련관건립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의 전신) 구성하였음.
- 서울청소년센터는 1970년 ‘중앙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하였음.
- 한국청소년육성위원회는 1973년 동 회관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했으며, 1992년부터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음.

- 한국청소년육성회의 전신인 단체(서울청소년수련관 건립위원회)가 서울청소년 센터의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단체라고는 하나,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서울시에 본 건물을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했고,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부터 현재까지 33년간 서울청소년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왔고,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28년간 수탁받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시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수긍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청소년센터는 대안교육기관(동그라미 학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운영과정 : 국어, 영어, 수학 등, 제과제빵, 바리스타, 슈가아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에서 신뢰성 있는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위탁사무 외 사업을 본 센터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수탁기관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이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고,
 - 대안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또는 지원의 주체가 교육청이라는 점,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에 속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서울시가 직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서울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차용하여 시립시설 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서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60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서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1길 23
- 개관일자 : 1970. 11. 11.
- 시설규모 : 부지 985 m^2 / 건물 6,911 m^2
- 주요시설 : 청소년아지트, 특성화공간 ‘움’, 동아리실, 예·체능실,
위탁형대안학교, 방과후아카데미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40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106백만원, 운영비 513백만원, 사업비 1,123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19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